

# 대학신문방송사 규정

제 정 : 2020. 9. 24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에 부속기관으로 설치한 대학신문방송사(이하 “신문방송사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**제2조(기능과 사명)** 신문방송사는 학내 언론기관으로서 대학신문의 발행과 대학방송을 통하여 금강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선양하고 나아가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출에 기여한다.

**제3조(소재)** 신문방송사는 대학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과 운영

**제4조(구성)** 신문방송사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발행인
2. 신문방송위원회
3. 주간
4. 사무국
5. 신문편집국
6. 교육방송국

**제5조(명칭)** ① 신문방송사의 정식 명칭은 ‘금강대학교 신문방송사’라 하고, 영자 표기는 ‘GGU PRESS’라 한다.

② 신문편집국의 정식 명칭은 ‘금강대학교 신문편집국’라 하고, 영자 표기는 ‘GGU POST’라 한다.

③ 교육방송국의 정식 명칭은 ‘금강대학교 교육방송국’이라 하고, 영자 표기는 ‘GBS (Geumgang Broadcasting System)’라 한다.

**제6조(사업)** ① 신문편집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<금강대신문>(이하 “신문”이라 한다.) 발행
2. <금강웹진>(이하 “웹진”이라 한다.) 운영
3. 학술 및 문화 활동
4. 온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
5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제사업

② 교육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내외 소식 및 공지사항 보도를 위한 영상뉴스 제작 및 송출
2. 정서순화 및 교양증진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

3. 대학 홍보 프로그램 제작
4. GBS 방송제
5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제사업

**제7조(발행인)** 발행인은 총장으로 하며, 신문방송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8조(신문방송위원회)** ① 신문방송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·심의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주간, 신문편집국장, 교육방송국장, 행정간사 및 주간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위촉하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주간이 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신문방송사의 편집계획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계획에 관한 주요사항
2. 신문방송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신문방송사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

**제9조(주간)** ① 신문방송사 주간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기획관리처장 보직 임기를 따른다.

② 주간은 발행인의 명을 받아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주간은 편집인으로서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에 대한 편집지도권, 배포권, 방송 송출권을 가진다.

**제10조(논설위원)** ① 신문방송사에는 사설을 집필하는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논설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사무국)** ① 신문방송사의 통합 행정부서로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간사를 두며, 신문편집국과 교육방송국에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
③ 행정간사는 기획관리처 대외협력팀 소속 교직원 또는 조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.

④ 편집간사는 금강대학교 교직원 또는 조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.

⑤ 편집간사는 행정간사의 지휘를 받아 기획·편집 및 제작 등에 관하여 주간을 보좌한다.

**제12조(신문편집국)** ① 신문편집국(이하 “편집국”이라 한다.)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기자를 둘 수 있으며, 부서 편제는 주간이 정한다.

1. 국장

2. 부국장
3. 부장
4. 정기자
5. 수습기자
- ② 학생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6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포함한다.
- ③ 국장·부국장은 학생기자 중 주간이 임명하며, 편집국장은 학생기자를 대표한다.
- ④ 각 부장은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- ⑤ 정기자는 수습기간을 끝낸 수습기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간이 임명한다.
- ⑥ 수습기자는 편집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.
- ⑦ 편집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간이 임명한다.
  1. 졸업생(수료생을 포함한다.): 학생기자 경력 1년 이상
  2. 재학생(휴학생을 포함한다.): 신문방송사에 재직 중이 아니며, 학생기자 경력 1년 이상

**제13조(교육방송국)** 교육방송국(이하 “방송국”이라 한다.) 구성 및 방송국원과 명예국원의 임명은 전조를 준용한다.

### 제3장 수혜 및 상벌

**제14조(장학금)** ① 신문방송사는 재학 중인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(이하 “학생사원”)에게 「장학금지급규정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
② 장학금 수혜대상자와 지급액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주간이 따로 정한다.

**제15조(연수)** 신문방송사는 학생사원의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, 시행여부 및 세부사항은 각 국장의 요청을 받아 주간이 따로 정한다.

**제16조(포상)** 신문방송사는 학생사원 중 재직 시 대학 또는 신문방송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발행인 또는 주간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「학생상벌에 관한 규정」과 주간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17조(징계)** 학생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- ① 제2조에 명시된 사명에 위배되거나 신문방송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 발행물 또는 방송물의 편집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행위를 한 경우
- ③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경우
- ④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주간이 따로 정한다.

## 제4장 재 정

제18조(재정) 신문방송사의 재정은 교비로 운영한다.

제19조(광고 및 기타 수익금 처리) 신문제작, 방송제작과 관련된 외부광고수입금 및 구독료 등 신문방송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학교회계에 납부한다.

제20조(예산 및 결산) 신문방송사의 예산 및 결산은 「재무회계 규정」에 따른다.

제21조(회계연도) 학보사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22조(재산귀속) 신문방송사가 해산할 경우 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
## 제5장 보 칙

제23조(세부사항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간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로 시행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대학방송신문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3. (경과조치)
  - 가. 이 규정 시행당시의 「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」 별표2와 관련하여 운영된 금강웹진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신문편집국으로 본다.
  - 나. 이 규정의 제정일 이전에 신문방송사에서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